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8. 30 선고 2022가단512010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유한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변 론 종 결 2023. 8. 16.

판 결 선 고 2023. 8. 3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1. 피고와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3/9지분에 관하여 2019. 11. 4.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4,203,183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4,203,183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D에 대한 채권

- 1) D은 2016. 12. 7.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과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며, 2021. 8. 24. 기준 신용카드 거래 등에 따른 D의 채무는 4,133,129원이다.
- 2) 원고는 2021. 8. 24. E의 D에 대한 신용카드대금 채권 4,133,129원을 양수하고, E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그 무렵 D에게 채권양도를 통지하였다.
- 3) 원고는 D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전101868호로 위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22. 1. 12. 'D은 원고에게 4,133,129원 및 그중 3,133,565원에 대하여 2022. 2.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나. 피고와 D 등의 상속재산협의분할

- 1) 망 F(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9. 11. 4.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D과 피고 등 3명의 자녀들이 공동으로 상속하였다.
- 2) 망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9. 11. 4. 망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소유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하기로 협의하고(이하 '이 사건 분할협의'라 한다),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북부산등기소 2019. 12. 27. 접수 제58837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E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부동산 중 3/7 지분이 유일한 재산인 D이 이 사건 분할협의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은 이 사건 분할협의로

인하여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며, D의 자녀인 수익자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는 사해행위로서 4,203,183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4,203,18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신용카드가입계약은 신용카드의 발행 및 관리, 신용카드의 이용과 관련된 대금의 결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기는 하나 그에 기하여 신용카드업자의 채권이 바로 성립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카드를 발행받은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신용카드가맹점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하거나 용역을 제공받음으로써 성립하는 신용카드매출채권을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신용카드업자로부터 자금의 융통을 받는 별개의 법률관계에 의하여 비로소 채권이 성립하는 것이므로, 단순히 신용카드가입계약만을 가리켜 여기에서 말하는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등 참조).

다.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분할협의 이전에 D이 E과 사이에 신용카드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신용카드대금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이 법원의 사단법인 G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결과에 의하면, D은 E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서 그

대금을 변제하여 오다가 원고가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는 이 사건 분할협의일(2019. 11. 4.) 이후인 2020. 4. 17. 최초로 E에 대한 3,133,000원 상당의 신용카드대금 연체등록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가 이 사건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으로 주장하는 신용카드대금이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이미 발생되어 있었거나 그 무렵 같은 액수가 연체되기 시작하였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신용카드대금 채권은 사해행위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민정

[별지]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북구 , 아파트 동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북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1층 호

철근콘크리트조

58.80㎡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및 대지권의 표시

1. 부산광역시 북구 대 3067㎡2. 부산광역시 북구 대 7220㎡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2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306700분의 859, 722000분의 1984

끝.

